

29차 단운위 속기록

19:04 개회

출석

회: 보고안건 1번은 넘어가고, 2번은 어제 있었던 연석회의 운영위 보고. 논의안건 3개, 검토안건도 소개를 드려야 할 듯. 논의안건 1번은 공간조정세칙 관련 논의. 원래는 세부 내용까지 복붙을 하는데, 요즘은 연석회의 체제이다 보니 안건지와 결과지 업로드가 늦어지는 중. 그래서 발췌는 못 했고, 회의록을 제가 가져온 걸 읽어보시면 될 듯. 공간조정세칙은 총학에서 학관에 가지고 있는 여러 방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단위를 검토하겠다는 내용. 두 번째는 생협 후속 대응 논의. 어제까지 1800분 정도의 서명이 모여서 총장님께 면담을 요청드리기로 했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원관 식당도 저녁 식당 제공안 되고, 기숙사 식당도 토요일에는 배식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신 듯. 3번은 1번이 인준되어서 다루지 않았음. 검토안건 1번에서 장학제도 개편 관련 설문 검토의 건이 있었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될 듯. 지금은 마지막 문안 검토의 과정. 연석회의에서 전대 방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혹시 질의가 있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안건 3번으로 넘어가면, 지난 주 목요일 21일에 사회대도서관장님 면담을 진행해서 pc 현황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도서관 측에서도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한 번 더 조사했고, 교체가 필요한 pc를 확인했음.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 3월에 예산 편성 시 pc 교체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이 내용을 내년까지 잘 전달해야 할 듯. 두 번째로 12/22 지난 주 금요일에 수시생 면접 1차 응원을 진행함. 그리고 11/22 선거 당선자가 확정되고, 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 학생회장이 임기가 시작될 때 해소가 됨. 그리고 11/23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에 참여했음.

일치: 선거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요, 지난 회의 끝나고 선관위원장님께서 관련 불만 의견이 잘 들어오지 않다고 하셔서, 관련 의견을 정리해서 회장/부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단운위지만 의견을 남기려고 함. 전달 드리기 앞서서, 현재 시행세칙들의 미비점들이 있어서 관련된 불만이나 우려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과반 징계 관련해서는 한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논의안건으로도 있어서 말씀만 드림. 그리고 선거 독려 관련. 이번에는 선본에서 조직적으로 참여 독려를 하다 보니 사실상 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음. 강의실에 조직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카톡에 투표를 파서 선거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도 들었음. 단선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효과 면에서 선거운동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세 번째는 선관위의 선거 독려. 선거 성사가 선관위의 업무이기는 하나,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행정실을 통한 문자 발송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특히 행정실에 연락처가 가 있는 것은 개인정보인데, 이를 어쩔거나 과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많았음. 그 외에는 선거 기간 중에 투표 부스가 이동했는데, 이에 대해 저에게도 문의가 들어왔었음. 앞으로는 선관위의 선거 참여 독려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장투표 관련해서. 일단 기간. 이번 같은 경우는 본투표가 4일인데, 연장투표가 3일인데, 이 둘이 큰 차이가 없었음. 연장투표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쩔거나 보충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종료의 불확실성. 선거 종료 시점이 불확실해서 반대 의사를 지닌 유권자의 행위가 제한되었음. 최소한 연장 투표의 종료 시점이 첫 공고에서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관련 회칙 및 세칙의 개정이 다음 선거 이전에는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 답변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 드렸는데, 의견 모아주셔서 감사.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연장투표 기간의 제한이 없고, 투표소 이동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고. 공감을 하고. 다음이나 그 다음에 개정안을 들고 나타날 수 있어서.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시: 혹시 개정할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에서 회칙 개정을 1년을 했으니깐. 그리고 질문인데, 문자 관련해서 스트레스로 돌아오나요?

한길: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 것.

시: 문자 관련해서는 저는 공감을 안 하는 게, 하루에 오는 스팸 메일만 해도 몇 개인데. 저만 유독 무심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한음: 저 같은 경우는 스팸으로 치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었는데, 왜 자꾸 올까 라는 의문은 있었음.

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올해 8월에 선거독려 자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그것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데,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관련 조항이 있어서 참고해서 같이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투표 부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세칙의 미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하나를 줄였잖아요. 이것에 대해 선본 측에서 좀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런 취지에서 부스 이동이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이는 맥락을 설명 드리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연장투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총학 기준으로 보면 본투표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는 가능함. 타 단과대를 가지고 보더라도 3일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함.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시: 사회대에서부터 새로운 개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 농담 반 진담인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회: 저는 진보 보수의 가치라기 보다는 연장투표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가치판단의 논의가 들어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단위 보고.

불꽃: 저희는 딱히 없었고, 내일 대표자회의를 준비 중.

시: 대표자회의가 뭔가요?

불꽃: 올해 신설함. 반운위를 없애고 대표자회의를 의결기구로. 매 달 한 번씩 관례적으로 열림.

구성은 18학번 3, 19학번 3, 의장인 제가 있어서 반의 운영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길: 왜 그렇게 한 건지?

불꽃: 제 전임자가 하셨는데, 회칙을 개정하시고 제가 처음 시행을 하게 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불편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칙과 회칙 개정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운영하다는 것이다보니 충돌조항도 많고. 기존에 운영기구가 의결까지 담당을 하다보면 견제 세력이 없다는 느낌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느낌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은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시: 선거 말고는 사실 딱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길: 저희도 딱히 하고 있는 거는 없고, 간식사업 일자를 정하는 중.

한음: 저희도 특별한 거 없고, 반운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 한음반은 회칙을 만드셨나요?

한음: 네.

일치: 지난 주 수요일에 더민주 김종민 의원 오셔서 강연했고, 그 다음에는 회칙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깃대가 많이 낡아서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불꽃: 초청 관련해서 연사비는 어디서?

일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불꽃: 어떻게 컨택을 하셨는지?

일치: 과 특성상 정치인들을 많이 부르고, 그들의 경우는 오는 게 더 이익이다 보니까 주로 메일을 많이 이용하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로 메일 또는 전화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꽃: 저희도 유승민, 유시민을 초청하려고 해서.

겨레: 저희도 선거 이외에는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회: 서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논의안건이 2개이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해봅시다. 1번부터. 불꽃반 학생회장님이 올려주신 것이고, 그대로 답았습니다. 일단 읽고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질문은 같이 고민하거나 찾는 방법으로 해소를 하게 될 듯 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시: 저희가 연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쪽이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되는 건가요?

회: 저희가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되는 것.

시: 연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회: 민주대학을 만들기 위한 한신대학교 학내 주체들이므로 보이고, 학부생들뿐 아니라 교수님들도 포함하는 것인 거 같습니다.

시: 그러면 단적으로 이 성명문을 누가 작성했나요?

회: 보내주신 단체에서 작성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일치: 반대 발언. 내용상으로는 크게 쪼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관련 내용에 대해 사회대에서 한신대 총학생회에 연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문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한신대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연대의 대상은 사회변혁노동자당에 연대를 하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에 직접적으로 연대의 의사를 보냈고, 물론 입장문의 발표에 사회대의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대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함. 그런 상황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별도의 정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회대가 연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변혁노동자당에 연서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활동이나 투쟁 방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연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해석한 것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일동을 모아서 한신대 투쟁에 함께 한다고 생각했음.

일치: 저는 그렇다고 한 번 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굳이 별도로 돌아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 제가 보기에는 그때랑은 내용상 달라진 지점을 언급하면서 연서명이 작성되었다고는 생각함. 이번에는 총장신임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여러 층위에서 표현해왔는데 징계나 경고 조치 등으로 사실상의 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문이라서 맥락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 현 쟁점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다면 저는 기권 발언. 일단 여태까지 진행된 논의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일치반 학생회장님의 의견을 이해하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 연대를 한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크게 느끼실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미가 또 있으니까요. 저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또 힘을 합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론하고픈 쟁점은, 사회변혁노동자당에 대해 언급을 드리고 싶음.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솔직히 너무 싫음.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스타일이 너무 싫음. 저보다 짬이 더 많으신 학생회장님이나 부학생회장님들은 구체적 예시들을 잘 아실 것.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과 연대를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연대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과거에 귀납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감. 그런데 반대가 아니라 기권인 것은, 바미당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봐온 모습은 중앙과 서울대분회의 모습이니 그것만으로는 전남대분회를 평가할 수 없기에 기권 발언을 남깁니다. 기권이

사실 반대와 똑 같은 효력을 지니나 상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함. 저는 그 취지에서 기권을 남깁니다.

회: 저는 일치반, 시반 학생회장님 의견과 다르게 생각되는 지점과 불꽃반 학생회장님 말씀도 있지만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은 아니라고 보임. 왜냐면 연서명 자체도 명의를 제정당·시민사회단체의 명의로 나가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될 것. 그리고 연대하기 위해서 학내 주체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제안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남겨야 하나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아까 제가 메신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권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왜 메신저가 중요한가를 말하려다가 안 했음. 근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정치에서 중요한 이유는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함.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구라를 칠 가능성이 있는가, 몇 퍼센트 인가라고 생각함. 내일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분노를 한 이유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 그리고 주동자는 누구였든지 간에 방관한 사람들이 있고, 복수였기에 분노를 한 것. 우리가 만약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야 한다. 신뢰가 있는 사람과는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치, 외교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 다시 돌아가서, 위원 분들 여기 있는 정보를 다 팩트 체크를 하셨나요? 안 하신 이유는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 만약 시흥캠 관련해서 안건이 나왔는데, 본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팩트체크를 할 것. 본부는 구라를 칠 수 있기 때문. 우리가 이것을 팩트 체크를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 그런데 저는 신뢰가 없기에 기권 발언을 남기는 것. 그리고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 하면 메시지도 신뢰하지 못 할 것.

회: 여기서 팩트 관련해서 의심이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확인을해보시면 되는 것이 아닌지?

시: 제가 이걸 4시에 읽어서.

한길: 찬성 의견.

회: 의견을 대부분 한 번씩은 주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사실 관계 확인과 메신저의 중요성을 저도 이해는 하나, 이거를 수신하는 대상은 한신대의 주체들이 될텐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적었다고 할 때, 무슨 의도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적을 사유는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연서명의 문안이 주어졌고, 우리가 연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저는 찬성 발언을 남깁니다. 더 의견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시: 의견 있음.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악용할 여지와는 별개로 만약에 흑시라도 연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단적으로 말해 과정에서 과격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성명문에 흑시라도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는데, 사회대 운영위원회가 여기에 연명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 운동의 옳고 그름과 다르게 에타에서 사회대 까는 거가 증폭되기 딱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함.

불꽃: 저희는 사회변혁 운동이나 단체에 연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문에 대해서만 연서를 한다는 점에서 시반 학생회장님의 우려 지점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야 할 점, 팩트가 아닌 경우에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점도 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라 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 그리고 저는 첨언을 하자면 알기로는 점거가 이미 종료가 되었고 자진퇴거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당징계 철회, 끝나지 않은 요구의 차원에서 제안하신 듯. 조만간 엄청 문제가 되는 돌발행동이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음: 질의. 단식은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회: 네. 오늘로 15일차라고 합니다.

시: 엄청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불꽃반 학생회장님 말씀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 거짓이 드러났을 때 비용이 커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비용 편익적 행위를 하지는 않는 듯.

회: 그래서 좀 더 정보를 명확히 하자면 점거는 9월에 일주일 정도 진행했고, 지금은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현재는 단식이 주된 투쟁의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의견이나 있을까요?

시: 제가 속독을 해서 못 읽은 것일수도 있는데,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가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

회: 여기에는 아마 없는 듯.

불꽃: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데, 점거를 해제하면 징계를 주지 않겠다고 학교와 합의했는데 해제하자 무기정학을 준 것으로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표결.

찬성: 회, 뵈, 겨레, 한길, 불꽃

반대: 일치

기권: 한음, 시

회: 논의안건 1번 인준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징계 시 대상자에게 최초에는 진술권이 아예 없어서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징계의 수위가 3가지가 있는데, 시정권고-주의-경고. 그 중 시정권고의 징계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징계라서 이까지 대중공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총학의 경우 시정권고는 대중공고를 하지 않음. 그것에 대한 개정안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현재의 시행세칙 상으로는 선관위가 징계를 하면서 학생회원의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권한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 저는 어떻

게 논의를 했으면 하나면, 일단 32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음. 이것이 징계 과정에서 변론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임. 32조 2항을 보면 원래 징계절차가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구체적 내용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24시간의 변론권 보장을 하는 조항. 선거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이 안에 구체적인 징계 사안이 결정되고, 이후 대중공고가 되어야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시간적 한계 때문에 24시간으로 소명의 기한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조는 2, 3항을 개정했는데, 시정권고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상의 수정이 이루어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기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이의신청의 절차를 세칙 상 보장을 함. 그리고 36조에 삭제된 것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 제가 회칙과 세칙을 잘 몰라서 그런데, 32조 8항 같은 경우 각 투표소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하고, 시정권고는 33조 2항에 따라 공고되지 않는 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완전하게 논리적 충돌 없이 만드려면 전문개정을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개정한 것. 세칙을 쓸 때 의도는 징계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투표소에 부착하는 것을 공고로 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불꽃: 32조 8항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공고를 내리는 것을 선관위의 권한으로 남기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될까요.

불꽃: 33조 2항도, 서술을 바꿔야 할 듯. 아니면 33조 8항의 단 이후의 부분을 넣는 것이 어떨지.

회: 32조 8항을 바꿔서

일치: 주의 이상의 모든 징계사항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시정권고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 굳이 금지로 써놓기 보다는 주의 이상의 모든 징계사항이 기록된 문서라고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

회: 저희가 시정권고를 완전 비공개할 지 투표소에서만 공개할지,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문구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일치반 말씀은 선관위가 선택을 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일치: 네.

회: 그런데 일치반 말씀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문구의 해석 상 공고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공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의 이상의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음. 카톡방에 문구를 올렸음. 이외에 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

불꽃: 35조 3항의 경우 개정 전에는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을 투표권 정지로 해석 가능한데, 투표권 정지가 삭제되면 추가 징계의 수단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회: 선거운동본부는 추가적인 징계가 가능함.

회: 시반 학생회장님이 특방에 올려준 내용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결정과 논의뿐 아니라 전달과 공고까지를 포함하는 즉시라고 생각함. 그런데 시반 학생회장님의 개정안을 보면 그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그 점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이의가 있기는 한데, 오늘 피곤해서 말이 잘 나와서 관련해서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회: 지금은 32조 8항이 수정되었고, 수정문안은 카톡 방에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

보: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데 새로 32조 2항에 신설한 내용을 보면 24시간 이내 소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시간이 아니라 날짜 기준... 전부 다 시간으로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32조 5항에서 48시간으로 바꾸는 게. 선거가 촉각을 다투는 일이기도 해서. 이의 신청만큼은 48시간으로 엄밀하게 하는 게 어떤지. 사실 선거시행세칙 시간 관련 부분은 거의 날짜로 정의 내리고 있기는 하나 이의신청은 시간으로 바꾸는 게 어떨지

회: 저는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바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려면 전문 개정을 해야 하기는 함. 말씀을 해주셨으니 32조 5항도 48시간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불꽃: 32조 6항도 바뀌야 하지 않은지.

시: 제가 주로 했던 것이 피드백이 있으면 나름에 숙의적 절차를 거쳐서 다듬은 다음에 다시 올리고 피드백 받고 했는데. 피드백을 다 받고 이거를 추진하고 싶은 사람이 수렴할 수 있는 선거지 수렴하고 다시 토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회: 저는 의견을 밝히자면 5항은 수정은 해도 되나, 6항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33조 3항, 32조 5항만 48시간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꽃: 33조 3항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가능 여부를 두는데, 34, 35조는 이의신청 관련된 내용이 없음. 왜 그런 것인지?

회: 사실 이의신청의 절차는 32조에 있는데, 그것은 공고된 시점부터 할 수 있는데, 시정권고는 공고가 안 되어서 33조에서 따로 규정을 한 것.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32조 8항에서 주의 이상의 징계를 부착하는 것, 33조 3항, 32조 5항에서 48시간으로 바꿈.

보: 질문. 32조 2항에서 즉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사유와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징계 절차 개시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회: 저는 구체적으로 개시의 의미는 징계절차를 할 것을 선관위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이 의견 상으로 개시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즉시 전달해야 하는 내용들이 징계의 내용과 사유가 나와 있음. 단순히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를 봐야 하지 않을까.

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는 24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날짜로 되어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시간으로 정의되어 있어 징계절차의 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회: 그런데 24시간의 기준은 전달받은 시점이라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보: 네 그렇네요.

시: 징계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상식적인 매체를 통한 것이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카톡이나 페메인데, 선관위원회 따라서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회: 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려고 함.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운영위원 분이 계시는지? 없으시면 박수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